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법령에 명시하여 예산 규모 예측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법무부 또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그”를 “포상금의”로 한다.

-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 기준) ① (생략) <u><신설></u>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 과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의 ----- ----- ----- -----.